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 - 오픈트레이드주식회사

상호협력협약서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과 오픈트레이드주식회사(이하 “오픈트레이드”)는 상호 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공동 발굴, 투자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서는 “지원단”과 “오픈트레이드” 간 상호 교류 및 발전, 우수 창업기업의 공동 발굴, 투자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원단”의 역할)

“지원단”은 본 협약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다.

1. “지원단”은 “오픈트레이드”에게 크라우드펀딩을 원하는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2. 위의 경우 “지원단”은 펀딩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등록비, 실사비, IR을 위한 동영상 및 자료 제작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단”은 “지원단”이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오픈트레이드”에게 모의 및 실제 크라우드펀딩 진행 관련 협력 또는 공동참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그 외 상호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제 3 조 (“오픈트레이드”의 역할)

“오픈트레이드”는 본 협약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다.

1. “오픈트레이드”는 “지원단”이 추천하는 우수 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오픈트레이드”는 “오픈트레이드”가 진행하는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단”에게 협력 또는 공동 참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그 외 상호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제 4 조 (비밀유지의무)

양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본 협약에 따른 협의 및 체결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이나 용도로 위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관계 법령 및 감독 기관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 5 조 (협약 기간)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협약이 해지되기 전 서면에 의한 협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 6 조 (협약 해지)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시정을 구하고, 적절한 시정이 없으면 본 협약을 협약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협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도 업무수행을 불완전하게 하는 경우
2. 상대방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이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4. 정부 또는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5.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를 개시한 경우
6. 중요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등이 발생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본 협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을 유지하기가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협약서 체결 사실 및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2월 22일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

단장 권순재

권순재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오픈트레이드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용기

고용기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1길 26